

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(송재봉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19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21.

발 의 자 : 송재봉 · 최혁진 · 허성무
복기왕 · 이수진 · 강준현
이재관 · 민병덕 · 이용선
박 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(KS)을 제정·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,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 등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할 수 있음.

그런데 최근 로봇 등 첨단산업 제품의 등장으로 신제품에 적합한 인증심사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, 허위의 KS 인증표시 등 범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선량한 기업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KS 인증심사 방식을 다양화하고, KS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표시를 하는 등의 범위반행위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KS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5조 및 제18조 등).

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 유형에 관한 사항

제15조제1항 중 “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”를 “제조, 설계 또는 설치·운영하는 자는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그 제품”을 “인증심사의 유형에 따라 그 제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품을 제조하는 자”를 “인증을 신청한 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”를 “인증을 신청한 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인증심사의 방법”을 “인증심사의 유형·방법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인증심사의 유형을 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시판품조사·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”를 “시판품조사·현장조사,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3호의2 중 “시판품조사·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”를 “시판품조사·현장조

사,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인증을 받은 자(이하 “인증받은자”라 한다)는”을 “인증을 받은 자(이하 “인증받은자”라 한다)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는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본문 중 “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”를 “현장조사,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제2항에 따른 조사”를 “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”로 한다.
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5조제3항·제4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공장, 사업장, 사무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, 시설 등을 조사(이하 “확인조사”라 한다)하게 할 수 있다.

제41조제1호 중 “시판품조사·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”를 “시판품조사·현장조사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”로 한다.

제44조제1항제1호 중 “시판품조사·현장조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”를 “시판품조사·현장조사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

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산업표준심의회) ① (생략)	제4조(산업표준심의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.	②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 유형에 관한 사항
6. (생략)	6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제품의 인증)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<u>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</u>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.	제15조(제품의 인증) ① ----- ----- ----- -----제조, 설계 또는 설치·운영하는 자는----- ----- ----- -----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인증심사) ① 인증기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<u>그 제품 또는 서비스</u> 가 한국산업표준 및 산업통상부령으로	제17조(인증심사) ① ----- ----- ----- 인증심사의 유형에 따라 그 제품-----

정하는 인증심사기준(이하 “인증심사기준”이라 한다)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(이하 “인증심사”라 한다)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인증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(試料)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·검정 또는 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인증심사의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. <후단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인
-----증을 신청한 자-----

-----.

④ -----

-----인증
신청한 자-----
-----.

⑤ 인증심사의 유형·방법-----

-----.

이

신설>

제18조(인증심사원) ① 산업통상
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제17조
에 따른 인증심사, 제19조제1항
에 따른 정기심사, 제19조제2항
에 따른 이전심사, 제20조제1항
에 따른 시판품조사·현장조사
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
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(이
하 “인증심사원”이라 한다)의
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심사
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
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
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
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
때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
다.

1. ~ 3. (생략)

3의2.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

경우 인증심사의 유형을 정할
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
야 한다.

제18조(인증심사원) ① -----

-----시판품조사·현장조

사,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

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인

조사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3의2. -----

제1항에 따른 <u>시판품조사·현장조사</u>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<u>조사</u> 업무를 수행한 때	-----<u>시판품조사·현장조사</u>, 제20조제2항에 따른 <u>조사</u>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<u>확인조사</u>-----
4. 5. (생략)	- 4. 5. (현행과 같음)
④ (생략) 제19조(정기심사 등)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<u>인증을 받은 자(이하 “인증받은자”라 한다)</u>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. ② ~ ⑥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 제19조(정기심사 등) ① ----- ----- <u>인증을 받은 자(이하 “인증받은자”라 한다)</u>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는----- ----- ---
제20조(시판품조사 등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0조(시판품조사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산업통상부장관은 제15조제3항·제4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공장, 사업장, 사무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, 시설 등을 조사(이</u>

③ (생략)

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,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,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·출입시간·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제41조(별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
하 “확인조사”라 한다)하게 할 수 있다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⑤ -----
-----현장조사,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-----

-----.

⑥ -----
-----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-----

-----.

제41조(별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-----

에 해당하는 자는 「형법」 제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. 1. 제20조제1항에 따른 <u>시판품 조사·현장조사</u> 또는 제20조 제2항에 따른 <u>조사</u>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 2. (생략) 제44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제20조제1항에 따른 <u>시판품 조사·현장조사</u> 또는 <u>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</u>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. ~ 4. (생략) ②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<u>시판품 조사·현장조사</u>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<u>조사</u>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<u>확인조사</u>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 제44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<u>시판품 조사·현장조사</u>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<u>조사</u>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<u>확인조사</u>----- -----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